

등록번호	시장경제과-11576
등록일자	2015.3.17.
결재일자	2015.3.1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경제진흥팀장	시장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
황인숙	김승희	이재호	전결 03/18 박진석
협 조			

2015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

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일반금융권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관내 상공인의 경영자금 등을 용자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2015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



기획재정국
시장경제과

I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
-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(안)[시장경제과-47371(2014.11.3.)]
- 201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[시장경제과-54443(2014.12.22.)]

II 용자개요

○ 2015년 용자계획

(단위:백만원)

구 분	계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
계 획	7,700	2,500	2,500	1,400	1,300

※ 전분기 지원후 잔액 발생시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집행

- 2/4분기 용자규모 : 2,500백만원 + 1/4분기 잔액
- 용자대상 :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,
 -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내 공장등록업체 / 도시형공장을 운영하는 자
 -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
 - 소기업 및 소상공인
 - 기타 벤처기업, 사회적기업 등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
- 용자조건 및 금액
 - 용자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자금

- 용자한도
 - ▶ 최근연도 매출액의 1/4(단, 업체당 최고 2억원)
 - ▶ 창업기업 등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업체는 3,000만원 이하
- 대출금리 : 연 2.5%
- 상환기간 :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

○ 대출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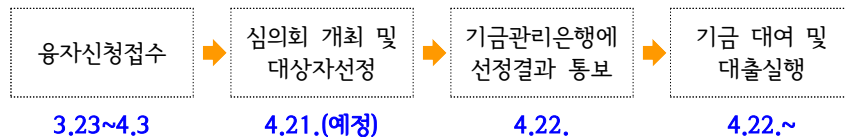
- 금융·보험업, 귀금속·주점·부동산·골프장·무도장 등 사치·투기성업체
- 신용관리정보대상자(신용등급 6등급 이하), 보증심사결과 부적격자 등
- 용자규모 초과 신청시 기수혜자 우선 제외

○ 기 타

-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우리구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 등에 따라, 우리구 (예비)사회적기업의 육성·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우선 용자지원

III 용자지원 일정

○ 용자절차 및 일정



○ 용자신청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2015. 3.23.(월) ~ 4. 3.(금)
- 신청장소 : 구청 시장경제과(방문접수만 가능)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

- 개최일시 : 2015. 4. 21(예정)
- 안 건 : 2015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액 및 용자대상자 선정

○ 기금관리 위탁 은행에 선정결과 통보, 기금 대여 및 대출실행

IV 특별신용보증추천제 시행

○ 특별신용보증의 개념

기술력과 사업성은 유망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이 불가한 관내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리구에서 신용보증을 추천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해당업체를 심사한 후 신용보증서 발행을 해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증방법

○ 추천대상 :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중 담보를 신용보증서로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

○ 추천방법 : 추천대상자를 선정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서 송부

○ 보증방법 : 우리구 출연금을 재원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정하는 소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 후 신용보증서 발행 교부

○ 보증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하

○ 기 타 : 우리 구 (예비)사회적기업의 육성·발전을 위해 사회적기업 용자신청 시 특별신용보증 추천 시행

V 홍보계획

- 중구청 홈페이지, 중구광장,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
-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직능단체 회의자료 홍보
- 중구상공회 홍보협조 의뢰

❖ 첨부

- [별첨 1] 기금용자안내문
- [별첨 2]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신청서
- [별첨 3] 사업계획서
- [별첨 4] 용자신청 승인 예비평가기준
- [별첨 5] 용자대상 우선 순위기준
- [별첨 6] 특별신용보증 추천서 양식

2015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

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**서울 중구 2015년 2/4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(대출)계획**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■ 신청기간 : 2015. 3.23(월) ~ 2015. 4. 3(금)

■ 신청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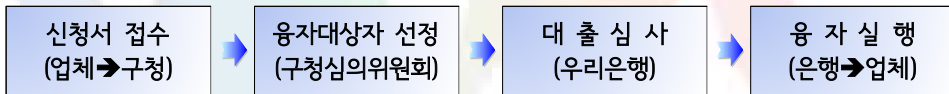
- 중구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,

-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
-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
- 비공업지역내에서 『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28조 규정의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
-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·소상공인
- 기타 사회적기업 등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

■ 융자조건

- 기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자금
- 융자한도 : 연간 매출액의 1/4 범위 내(업체당 최고 2억원)
- 대출금리 : 연 2.5%
- 상환기간 : 5년(1년거치/4년균등분할 상환)
- 담보(필수) : 부동산, 신용보증서 등
- 대출제한 : 신용정보관리대상자(신용등급 6등급 이하), 사치·투기·금융·부동산업 등

■ 기금융자(대출)절차



■ 구비서류

-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
⇒ 내려받기 : 중구청 홈페이지 접속→화면 좌측 ‘민원서식’ 클릭→‘융자신청서’ 검색
-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11년 ~ 2014년) 1부

■ 문의사항 연락처

- 전화문의 : 중구청 시장경제과 기금융자담당 ☎ 3396-5084
- 홈페이지 : www.junggu.seoul.kr ⇒ 공지사항 검색

2015. 3.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

신청인	대표자 성명			주민등록번호 (법인번호)	
	주 소			전 화 번 호 (핸드폰번호)	
사업체 현황	기업체명			설립년월일	
	사업자등록번호 (공장등록번호)			팩스번호	
	사업장소재지	(본사) 주소 :			
		(공장) 주소 :			
	사업체 규모	자산총액	백만원	총매출액	백만원
상시종업원			사업장면적	건물 : m ² 대지 : m ²	
대산업종 및 품목	업종		품목	사회적기업여부	
담보제공방법		부동산, 보증서, 신용보증추천, 기타			
신청자금	자금용도	총소요액	융자신청액	중구 기존대출 잔액	
	운전자금() 시설자금() 기술자금()	백만원	백만원	백만원	
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. 2015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					
구비서류				수수료 없음	
1. 사업계획서 1부 2.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 1부 3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11년 ~ 2014년) 1부 및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중 우대가점 증빙서류					
※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(공무원 확인사항) :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『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』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
				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	

사업계획서

I. 기업체 연혁

년 월 일	주 요 내 용	비 고
사업장형태	자가/임차 사업장규모	대지 m ² / 건물 m ²

주) 회사설립, 상호변경, 법인전환, 공장이전, 분공장설치, 대표자변경, 업종변경 및 추가, 기술도입, 합작투자 등을 기재

II. 제품 및 영업현황

1. 제품의 개요

주 생산 품 목	특성 및 경쟁상태

2. 판매실적(최근년도 실적을 연차적으로 기재)

년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
판매실적				
국내실적				
수출실적 (Local 수출포함)				
계				

주) ▶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(2011년 ~2014년)

3. 주요거래처 현황

구 분	업체명	대표자	거래품목	판매금액	전체매출액중 거래비중(%)	비 고
국내판매						
수 출						

주) 국내판매 및 수출액은 '2014년도 매출자료를 근거로 작성, 주요 거래처는 전체 매출액중 판매액 비중이 5%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

III. 기술 성

[해당란에 ○표한 것은 평점 반영자료이므로 필히 증빙자료 첨부]

1. 기술인력 확보(해당란에 기재)

기술인력확보			전문기관 교육여부			비 고 (기술인력 없음)
인원	기술자격 종류및등록	등록기관	인원	실시기관	기간	
	박사, 기술사, 기능장					
	기사(기사1급)					
	산업기사(기사2급), 기능사, 기능사보					

주) 제품생산 관련 기술자격(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, 기능사, 기능사보) 보유자, 전문기관 교육이수시 수료증 등 제출

2. 산업재산권 획득현황(해당란에 기재) ---- 제조업체만 해당

특허권 획득	실용신안권 의장, 상표권 등록	특허권, 실용신안권 출원	프로그램 등록	기 타
건	건	건	건	건

주) 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증등의 등록증사본이나 등록증원부, 출원 시에는 해당 출원 사실증명원등 해당 증명서류 첨부

IV. 기타사항 (해당되는 사항에 ○표)

[우대사항이므로 해당업체는 확인자료 첨부]

- 사업주가 중구 구민인 기업 ()
- 중구형 (예비)사회적 기업 ()
- 우리 구 취업지원과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체
- 중구 구세 납부 기업 ()
- 중구민을 구인한 기업(공고일 현재 근무) ()
- 재직증명서 첨부
- 여성 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()

용자신청업체 예비평가기준

□ 평가지표(100) : 기업의 성장가능성(60) + 구정기여도(40)

가. 기업의 성장가능성 평가(배점 60점)

평가 세부지표	배점	평가점수 산출 내용												
		우수	양호	미흡										
업체경력	10점	10년이상 - 10점	5년이상 - 7점	5년미만 - 5점										
매출액 증가율	15점	3년 평균 20% 이상 증가 - 15점	3년 평균 10% 이상 증가 - 10점	3년 평균 10% 미만 증가 - 7점										
		- 연간 매출액이 나오는 연도의 매출액만 적용 - 3개년 매출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2개년 매출액으로 평가 - 창업기업등 매출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점수 적용 - 산출방법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d>연도</td> <td>2008년</td> <td>2009년</td> <td>2010년</td> <td>2011년</td> </tr> <tr> <td>매출액</td> <td>a</td> <td>b</td> <td>c</td> <td>d</td> </tr> </table>	연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매출액	a	b	c	d		
연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									
매출액	a	b	c	d										
		A : (b-a)/a= % , B : (c-b)/b= % , C : (d-c)/c= %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= (A+B+C) / 3 = %												
기술인력 확보	10점	박사, 기술사, 기능장 인력 확보 - 10점	기사(기사1급) 인력 확보 - 7점	산업기사(기사2급), 기능사, 기능사보 인력 확보 - 5점										
		- 대표이사 및 등재이사를 포함하여 평가 할 수 있음. - 관련자격증이 있는 경우 자격증에 의해 평가 - 동일분야 경력자는 해당경력 증명 확인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												
전문기관 (연수지도) 여부	10점	최근 3년간 4회 이상 - 10점	최근 3년간 3회 이상 - 7점	최근 3년간 2회 이하 - 5점										
		- 수료증 또는 해당 입증서류(세금계산서등)에 의해 평가 (세미나등은 제외) - 연수 또는 지도중인 경우에는 수료한 것으로 평가												
산업재산권 획득 여부	10점	기술특허취득 - 10점	실용신안권, 의장등록, 상표권 - 7점	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출원, 프로그램등록등-5점										
		- 산업재산권 획득시 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증 등의 등록증사본이나 등록증원부, 출원시에는 해당 출원사실증명원 첨부한 경우 인정												
기 타	5점	'중소기업청 지정 유망선진기술기업' 등 중소기업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 등이라고 인증받은 기업체 우대												
		- 해당분야 증빙서류 제출시 인정												
계	60점													

나. 구정기여도 평가(배점 40점)

평가 세부지표	배 점	평가점수 산출 내용	확인근거
사업주가 중구 구민인 기업	10점	사업주가 중구 구민일 경우, 10점	자체확인
중구형(예비)사회적기업	5점	중구형(예비)사회적 기업일 경우, 5점	취업지원과 조회
중구민을 구인한 기업	10점	중구민을 고용하였고 그 수가 5명이상일 경우, 10점 2~4명일 경우, 7점 1명일 경우, 5점	재직증명서
중구 구세 납부 기업	10점	구세를 납부(용자신청 시기로부터 일년전까지) 하였고 그 금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, 10점 20만원 미만일 경우, 5점	세무2과 조회
여성경제인 운영기업	5점	용자신청 기업체 사업주가 여성일 경우, 5점	자체확인
계	40점		

201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대상 우선순위 기준(안)

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영조례제6조(기금운영심의위원회)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2(용자대상 우선순위 등)의 규정에 의거 용자대상 우선순위 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심의하기로 한다.

가. 용자대상 우선순위는 아래 순번에 의하되 서울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- (1) 예비심사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용자지원한다. 단, 중구형(예비)사회적 기업이 3천만원이하 용자신청 시, 당 기업의 예비평가득점과 관계없이 우선 용자지원한다.
- (2) 신청액 3천만원이하 소액신청자를 우선 지원한다
- (3) 제조업 지원 관련 지식서비스업 영위자 우선 지원한다.
- (4)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의 제조업 우선 지원한다.
- (5) 서울도심형 사업체에 대하여 우선 용자한다.

“가” (1)(2)(3)(4)(5)중 동일업체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업체순위로 한다.

- (가)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업가 우선
- (나) 중구민을 구인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계속 고용중인 업체 우선
- (다) 기 용자수혜자 보다 신규 용자수혜자 우선
- (라) 신청금액이 많은 업체보다 적은 업체 우선

특별 신용보증 추천서

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장 귀하

추천번호 : 2015-2-01

추천대상기업	업 체 명	중구사	사업자등록번호	201-01-00001
	대 표 자	홍길동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*****
	사업장주소	서울 중구 예관동 120-1		
	전화번호 (핸드폰번호)	*****	팩스번호	
	업 종	읍셋인쇄		
보증추천금액	30,000,000			
특 기 사 항 (추천사유 등)	위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, 용자 지원대상자 등으로 선정됨			

위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추천합니다.

2015. .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